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18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조인철·이개호·문진석
이건태·박용갑·장종태
허성무·최혁진·김우영
박수현·김현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자의 위법행위 및 고의적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많은 이용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범위에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포함하고,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허위조작정보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제44조의7제1항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4.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
5.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6.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가 제5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신 설> 3. ~ 9.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허위조작정보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 따

	른 정보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제44조의7제1항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4.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 5.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6.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